

생활관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생활관은 사생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의 편의를 도모하고, 신앙적 인격도야와 공동 생활을 통한 협동 정신의 함양과 건강 관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개관기간)

생활관의 개관 기간은 본교 학칙에 규정된 개학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3 조(시설물 이용)

- ① 개관 기간이 아닌 기간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교육 목적에 부합이 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총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- ② 사생 이외의 단체로서 생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.

제 2 장 생활관 운영 및 규칙

제 4 조(운영)

- ① 사비 및 식비는 학교 당국에서 정하며 등록시 학교에 납입한다.
- ② 시설 보수 및 집기 구입은 학교 재정에서 한다.
- ③ 동계 방학 및 하계 방학중에는 퇴사하여야 한다.
- ④ 생활관장은 사생들의 생활 및 영성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생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5 조(규칙)

- ① 외출시에는 밤 11시전까지 귀사하고, 외박시는 생활관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- ② 소등 시간과 기상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.
- ③ 여자생활관에는 원칙적으로 남학생 출입을 금하며, 필요시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회할 수 있다. 남자생활관도 이에 준 한다.
- ④ 외부 사람은 면회실에서 면회해야 한다.
- ⑤ 사생외 타인은 기숙할 수 없다.
- ⑥ 전열도구를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⑦ 생활관 시설 및 비품을 파손했을시 변상해야 한다.
- ⑧ 현금 및 귀중품을 분실했을 시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.
- ⑨ 생활관 내부를 개인이 임의로 구조·변경해서는 안 된다.

제 3 조(시설물 이용)

1. 개관 기간이 아닌 기간에 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교육 목적에 부합이 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총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2. 사생 이외의 단체로서 생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.

제 3 장 입사 및 퇴사

제 6 조(선발 기준)

- ①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.
- ② 관생선발 기준은 평균 B학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학년별, 학과별 인원을 배정하여 학기별로 선발한다.

제 7 조(입사 자격의제한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① 퇴사 처분 받은 자
- ② 입·퇴사원의 제출과 승인없이 임의로 입·퇴사한 자

제 8 조(입사 절차)

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원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후 생활관장의 입사 승인을 받고 입사비를 납부한자로 한다.

제 9 조(퇴사 처분) 생활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퇴사를 명한다.

- ① 생활관 규칙을 위반하여 관내의 생활을 문란케 하였을 때
- ② 납부금을 체납하였을 때

제 4 장 경건훈련

제 10 조(경건훈련)

- ① 경건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도모한다. 새벽기도회는 순번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, 각 방을 순회하며 예배 드린다.
- ② 주일과 삼일기도회는 본 교단이 소속된 지교회에 참석한다.
- ③ 신학생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(음주, 흡연)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④ 공동생활에서 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협동, 봉사, 친교, 정결한 생활의 훈련을 쌓는다.
- ⑤ 신학도로서 고상한 언어와 규칙적인 생활과 질서를 지킨다.

제 5 장 생활관운영위원회

제 11 조(설치)

본 생활관은 운영위원회를 두어 생활관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제규정을 결정한다.

제 12 조(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장, 교학처장, 교무처장, 생활관장, 서무과장으로 하고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- ② 운영위원회 임기는 해당직위 및 위촉기간의 정지시까지로 한다.

제 13 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생활관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②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③ 생활관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
- ④ 사생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4 조(회의)

-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가.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나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주요 업무를 심의할 때 생활관장 또는 사생회의 의견을 수렴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칙

-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